

제 10 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,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.
- ② 기금운용관은 시의 보건사회국장, 기금분임운용관은 시의 사회과장, 기금출납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
- 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“분임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분임기금운용관”으로, “분임기금출납공무원”을 “분임기금출납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 10 조(기금운용관)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	제 10 조(기금운용관)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	제 10 조(기금운용관)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,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.		
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사회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	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사회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	② 기금운용관은 시의 보건사회국장, 기금분임운용관은 시의 사회과장, 기금출납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		
③ 시 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구에 분임기금출납명령관과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	③ 시 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구에 분임기금출납명령관과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	③ 분임기금운용관.....분임기금출납원.....		
④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,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	④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,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	④ 분임기금운용관..... 분임기금출납원.....		

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□ 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5. 5. 12

다. 상정일자 : 95. 5. 22

라. 의결일자 : 95. 5. 22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

나. 내 용

- 조례중 생활보호법 제 "39조"를 "제3조"로, 동법 시행령 "제26조 및 제27조를" "제29조 및 제30"조로 함

- 기금출납명령관 → 기금운용관

- 기금분임운용관 → 신설

- 기금출납공무원 → 기금출납원

- 분임기금 출납공무원 → 분임기금 출납원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해 당	없 음

4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5. 수정안 내용 : 해당없음

6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없음

☐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

의안번호	386
의 결	95. 5. 30
년 월 일	(제 38 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☐ 개정이유

○ 생활보호법 관련 법령과 조례상의 법령조항이 상이하므로 현행법령과 부합토록 하기 위한.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[대통령령제13981호(93. 9. 23)]으로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법

령과 부합토록 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조례중 생활보호법 “제39조”를 “제37조”로, 동법시행령 “제26조 및 제27조”를 “제29조 및 제30조”로 함(안 제1조)
- 기금출납명령관 → 기금운용관. 기금분임운용관 → 신설. 기금출납공무원 → 기금출납원(안 제4조)

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제39조”를 “제37조”로, “제26조 및 제27조”를 “제29조 및 제30조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관리공무원임명)시장은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,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, 기금운용관은 보건사회국장,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,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 1 조(목적)이 조례는 생활보호법 <u>제 39 조</u> 와 동법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 <u>제26조 및 제27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생활보호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 1 조(목적)	<u>제37조</u>	
			<u>제29조 및 제30조</u>	
				
				
제 4 조(기금관리공무원임명)시장은 영 <u>제27조 제3항</u>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, 기금출납명령관을 <u>사회과장</u> , 기금출납공무원은 <u>사회계장</u> 으로 한다.		제 4 조(기금관리공무원임명)시장은 영	<u>제 30 조 제 3 항</u>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,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, 기금운용관은 <u>보건사회국장</u> , 기금분임운용관은 <u>사회과장</u> , 기금출납원은 <u>사회계장</u> 으로 한다.	